



손해보험의 이해 2: 보험료의 구성

김동겸 선임연구원

■ 보험상품의 가격에 해당하는 보험료¹⁾는 보험가입자가 위험보장에 대한 대가로 보험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으로, 보험계약자(소비자)와 보험회사(공급자)의 보험계약관계를 성립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함.

● 일반상품의 가격은 투입된 생산요소의 평균원가에 생산자가 희망하는 이윤을 부가하여 산출되는 반면, 보험상품 가격인 보험료는 장래의 일정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사전에 예측하여 산정하고 보험기간의 종료 시 정확한 원가가 확정되게 됨.

－ 보험상품의 가격은 미래의 불확정한 우연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특성을 보임에 따라, 일반상품의 사전확정적 특징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예정 또는 추정가격으로 불리기도 함.

■ 보험상품가격인 보험료는 순보험료(pure or net premium)와 부가보험료(loading premium)로 구성됨.²⁾

● 순보험료는 피보험자의 사망, 장애, 입원 또는 만기 등과 같은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시 보험금으로 충당할 수 있도록 계산된 보험료³⁾로, 위험보험료와 저축보험료로 구분됨.⁴⁾

－ 위험보험료는 사망보험금, 장애급여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이며, 저축보험료는 만기 생존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 재원이 되는 보험료임.

● 한편, 부가보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관리하기 위한 비용과 적정이윤을 충당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되는 보험료로 예정사업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출함.

1) 보험료(premium)와 보험요율(premium rate)이란 용어는 근본적으로 상이한 개념으로 볼 수 있으나, 때때로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함.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에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상품가격에 해당하며, 보험요율은 보험료를 산출하기 위하여 일정한 보험단위(unit of insurance) 또는 단위위험(exposure unit) 당 적용된 비율로서 보험요율에 보험금액을 곱하게 될 경우 보험계약자가 지불하는 보험료가 됨.

2)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한 보험료를 총보험료(gross premium)또는 영업보험료라고도 함.

3) 생명보험과 장기보험의 경우 예정위험률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장래 전체 보험기간 동안 보험료 수입의 현재와 보험금 지출의 현재가 동일하도록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보험료를 산출하며,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해당종목의 손해 빈도(frequency) 및 심도(severity)에 기초하여 보험요율을 산출함.

4)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순보험료는 위험보험료로 구성되며, 장기손해보험의 순보험료의 경우 저축보험료가 포함됨.

■ 손해보험의 보험가격 즉, 요율을 산출하는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판단법(judgement method), 손해율법(loss ratio method), 순보험료법(pure premium method) 등이 있음.⁵⁾

● 손해율법은 보험요율의 개정 시 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폭을 결정하기 위해 예정손해율과 실적손해율을 비교하는 방식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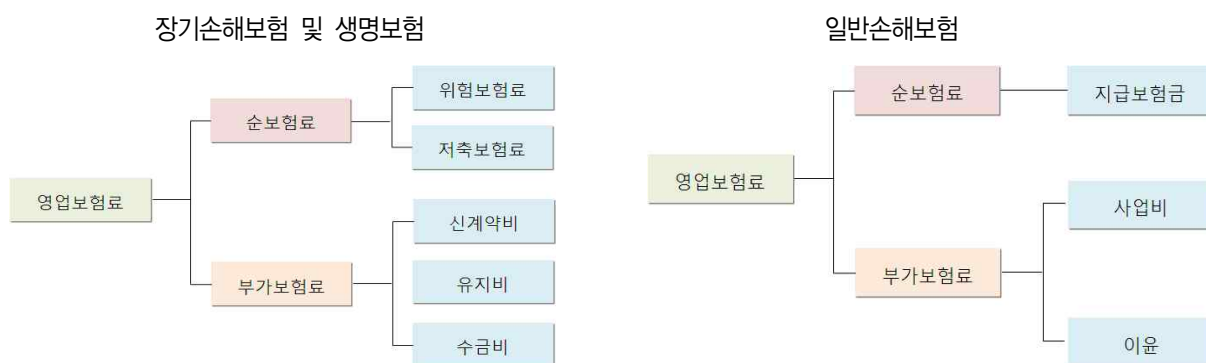
－ 손해율법은 사업의 운영결과로 나타난 실제손해액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기존 보험료를 수정하는 척도인 조정요인을 산출하므로 기존요율을 현실적인 요율수준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음.

● 한편, 순보험료법은 과거 요율의 존재여부와 관계없이 요율을 새롭게 산출하는 방식으로, 보험료 산출에 필요한 사고발생 빈도와 심도가 일정기간 동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동일위험집단에 대한 위험도를 예측하여 순보험료를 결정하는 방식임.

■ 한편, 생명보험에 있어 수지상등의 원칙에 따라 산정되는 보험료는 납입방법을 기준으로 자연보험료(natural premium)와 평준보험료(level premium)로 구분할 수 있음.

● 자연보험료는 매년 보험료 수입과 지출이 동일하도록 정한 보험료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률이 높아져 보험료가 상승하는 특징을 보이며, 평준보험료는 자연보험료를 전체 기간에 걸쳐 평준화하여 납입하는 형태임.

〈그림 1〉 보험료의 구성체계



5) 보험경제학적 가격산정 방식으로는 총수익률가격결정법(Total Rate of Return Model), 자본자산가격결정법(Capital Assets Pricing Model),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Model) 등이 있음.